

忠清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2. 4. 13.

運營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案者 : 金慶會議員 外 8 人

나. 提案日字 및 回附日字

◦ 提案日字 : 1992年 3月 31日

◦ 回附日字 : 1992年 4月 1日

다. 上程日字 : 第77回 臨時會

◦ 第1次 運營委員會 (1992. 4. 9) 上程 , 議決

2. 提案說明要旨

(提案說明者 : 運營委員會 金慶會議員)

가. 提案理由

◦ 國內旅費規程 (大統領令 第 13600號 '92. 2. 29)이 改正됨에

따라 關聯 條例를 整備하기 爲함

나. 主要骨子

- 從前에는 特地, 甲地 및 乙地の 3個 地域 區分에 따라 旅費를 差等 支給하였으나 앞으로는 旅費支給對象地域을 甲地 및 乙地 2個地域으로만 區分하고 宿泊費, 現地交通費 等の 國內旅費 單價를 平均 10 % 引上하였으며

- 引上된 內容은
 - 現地交通費는 甲地의 경우 4,500원에서 5,000원으로 11 % 引上되었고,
 - 宿泊費의 경우 甲地는 15,000원에서 17,000원으로 13 % , 乙地는 13,500원에서 15,000원으로 11 % 引上되었으며,
 - 食費는 甲地 10,000 원에서 11,000원으로 10 % , 乙地 9,000원에서 9,500원으로 5 % 를 引上하여 平均 10 % 引上함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 閱 責 植)

- 國內旅費 規程이 '92. 2. 29자로 改正 (大統領令 第 13600號)됨에 따라 그에 따른 關聯條例를 整備하기 爲한 것으로,

- 地方議會議員이 會期中 地方議會의 會議 (以下 "本會議"라 한다)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依하여 公務로 旅行할때에 支給할수 있는 旅費를
- 現在는 3個地域으로 區分 支給하던것을 2個地域으로 調整하여 支給할수 있도록 하고 宿泊費, 現地交通費 等の 國內旅費 單價를 平均 10 % 引上한것으로서 本 條例案은 妥當하다고 思料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(答辯者 : 總務擔當官 郭東國)

質疑要旨	答辯要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旅費支給의 現實化와 實費 報償이 되도록 改正方案은 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日費 와 旅費의 支給 基準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支給

5. 討論要旨 : 該當事項없음

6. 審査結果 : 原案대로 議決 (參席 7 人 , 贊成 7 人)

7. 少數意見要旨: 該當事項없음

8. 其他必要한 事項 : 該當事項없음

9. 添 附

가. 忠淸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

나. 國內旅費 支給 基準 新,舊條文 對照表